

<p>천마의 집의 住所를 變更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原案대로 可決하였습니다.</p> <p>다음은 서울Education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에 대하여 審查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.</p> <p>主要骨子를 말씀드리면, 서울特別市教育監所屬下에 11人 이내의 서울Education財政計劃審議委員會를 設置하여 Education財政計劃樹立, 財政運營Direction, 財源調達, 投資事業計劃樹立 등에 관한事項을 審議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</p> <p>當委員會에서 審查한바, 地方自治法 第15條 및 地方財政法 第16條의2에 근거하여 本委員會를 設置하여 Education財政計劃樹立, 財政運營Direction, 財源調達, 投資事業計劃樹立 등에 관한事項을 審議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</p> <p>이것은當委員會에서 執行部의 說明을 듣고 그리고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마친 후 우리委員들이深深한 討議를 거쳐서 滿場一致로 可決했습니다.</p> <p>아무쪼록 深思熟考하셔서 原案대로 可決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</p> <p>감사합니다.</p> <p>○議長 白昌鉉 수고하셨습니다.</p> <p>그러면 文化Education委員會에서 審查報告한 서울特別市教育·學藝에關한Education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Education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.</p> <p>존경하는 議員 여러분, 異議 없으십니까?</p> <p>(「없습니다」하는 議員 있음)</p> <p>異議 없으시면 이상 2件이 각각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(參照)</p> <p>서울특별시교육·학예에관한교육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교육·학예에관한교육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2조제1호의 표중 대성의 집 위치란을 다</p>	<p>음과 같이 하며, 천마의 집 위치란의 “남양 주군 미금시”를 “남양주시”로 한다.</p> <p>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 548번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256번지 의 6호</p> <p>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 4 조(시행세칙) 각 교육원의 직제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.....</p> <p>서울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</p> <p>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소속하에 두는 서울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 2 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부교육감이,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기획관리실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실·국장</li> <li>2. 교육 또는 재정분야의 전문인사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</li> </ol> <p>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</p> <p>제 3 조(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되며,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.</p> <p>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제 4 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교육감의 자</p>
--	---

<p>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교육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교육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</li> <li>5. 기타 교육감이 제출하는 사항</li> </ol> <p>제 5 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</p> <p>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.</p> <p>제 6 조(안건배부등)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/p> <p>제 7 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.</p> <p>제 8 조(관계기관등에의 협조요청)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등을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제 9 조(심의록) 간사는 위원회가 개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</li> <li>2. 출석위원 성명</li> <li>3. 심의사항</li> <li>4. 심의결과</li> <li>5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li> </ol> <p>제10조(수당)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11조(결과보고)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</p>	<p>다.</p> <p>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hr/> <p>9. 서울特別市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中改正條例案(서울特別市長 提出)</p> <p>10. 서울特別市서울館設置·運營에關한條例案(서울特別市長 提出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15時 49分)</p> <p>○議長 白昌鉉 다음은 議事日程 第9項 서울特別市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中改正條例案, 議事日程 第10項 서울特別市서울館設置·運營에關한條例案, 이상 2件을 一括上程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文化教育委員會 朴善童議員님 나오셔서 審查結果를 一括해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朴善童議員 존경하는 議長님,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, 文化教育委員會 所屬 朴善童議員입니다.</p> <p>1995年 3月 25日 서울特別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同年 3月 28日 當 委員會에 回附된 서울特別市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中改正條例案과 1995年 3月 30日 서울特別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同年 3月 31日 當 委員會에 回附된 서울特別市서울館設置·運營에關한條例案에 대한 委員會 審查結果를 上程順序대로 一括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.</p> <p>먼저 서울特別市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主要骨子를 말씀드리면, 서울特別市國際化推進協議會를 서울特別市世界化推進協議會로 名稱을 變更하고, 協議會 委員을 15人 이내에서 20人 이내로 調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</p> <p>當 委員會에서 審查한바, 地方自治法施行令第42條와 서울國濟化推進協議會構成및運營計劃市長方針 第129號(95.2.14)에 따라 서울特別市國際化推進協議會를 서울特別市世界化推進協議會로 名稱을 變更하고, 協議會 委員을 民·官</p>
---	---